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다양하고, 입주기준·임대료 부과체계 등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계약 해제·해지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33조제1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중 “처분하는 경우”를 “처분하는 경우(다만, 소송 등으로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 등으로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u>제3호까지</u> 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3조(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 ----- ----- ----- <u>제3호까지</u> 및 제8호-----.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생략)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 ----- 제3호까지 및 제8호----- -----.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생략)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 ----- -----.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가. ----- -----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u>처분하는 경우</u>	----- ----- ----- ----- ----- <u>처분하는 경우(다만, 소송 등으로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u>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u>경우</u>	나. ----- ----- ----- ----- ----- <u>경우(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 등으로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u>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① ----- -----

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 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 의 기간을 말한다.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 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 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6. ----- 제5호----- -----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 대주택: 5년	7. ----- 제6호-----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580

< 의안 소관 부서명 >